

報道資料

이 자료는 2002.5.24(금) 조간, 통신
및 인터넷매체는 5.23(목)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題目 :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

主要內容

□ 정부와 민주당은 2002.5.23(목) 14:00, 전윤철·경제부총리, 이근영
금감위원장, 박병운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최근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별첨과 같이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 회원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 부당 모집행위 금지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
-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 직불카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동 종합대책은 상반기중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2002.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붙임 : 신용카드 종합대책

※ 이 자료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報道資料生産課：金融政策局 保險制度課 (TEL: 2110-2360~2)

과장 박 재식, 담당 사무관 김 재환

財政經濟部 公報官

이 자료는 2002년 5월 24일 노간
통신 및 인터넷 예제는 5.23 15시 00 분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종합대책

2002. 5. 23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63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2
III.	추가 개선대책	3
1.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3
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	6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11
4.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13
5.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	16
IV.	추진계획	18

I. 추진배경

-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하고 위규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이에 따라, 가두모집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남발이 줄어드는 등 영업질서가 일부 개선
-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불합리한 회원 분류”에서 나타났듯이, 아직도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음.
 - 대다수의 고객이 20%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
 - 회원확보 위주의 경쟁을 지속하면서 신용카드를 남발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관행도 여전
 - 무리한 채권추심, 이용대금 부당전가 등으로 카드이용자 피해도 증가
- 이러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
-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을 대폭 보완하여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추진

II.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여 2001년 이후 2차례 수수료 인하

-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4개 대형 카드회사 기준)

- 27.6~29.0%(2000.12말) → 14.0~25.8%(2001.6말)
→ 13.0~23.8%(2002.3말)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2001.12)

-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여부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

-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시 부모의 사전동의 등 의무화

□ 가두모집 금지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도입(2002.2)

- 불법적인 가두 회원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카드모집인을
여전협회에 등록토록 의무화

□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 위규회사에 대해 엄중제재(02.3)

- 2002.2~3월중 25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3개 카드회사의 신규카드 발급업무를 정지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확대(02.1)

- 카드 도난·분실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25일전”에서 “60일전”까지로 확대

III. 추가 개선대책

1.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달금리 인하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대규모 수익창출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하는 미흡

- 카드회사의 평균조달금리 : '98년 13.9% → '01년 7.4%
- 주요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

	<u>2000.12말</u>	<u>2001.6말</u>	<u>2002.3말</u>	(%)
국민	27.8	→ 14.0~25.8(7/8)	→ 13.8~23.7(2/1)	
엘지	29.0	→ 15.5~25.8(5/28)	→ 14.0~23.8(1/1)	
삼성	29.0	→ 15.5~25.8(5/28)	→ 14.2~23.8(1/1)	
외환	27.6	→ 14.5~25.7(7/30)	→ 13.0~23.7(3/18)	

□ 특히, 카드회사들이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

- 80% 이상의 회원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하위그룹으로 분류
 - 회원의 신용도 보다는 이용실적, 이용한도 소진율 등 회사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회원을 분류
- ⇒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 회원들은 20%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

나. 개선방안

◇ 회원의 신용도와 회사의 수익·비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개선

①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고, “신용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분류 체계를 개선

-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시, 중위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도 및 거래실적을 반영하여 상하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정규분포 형태가 되도록 개선
 - 신용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객은 중상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분실·도난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준 고객은 중하위 등급으로 분류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 신용도가 높은 회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회원 분류시 회원의 “신용도” 반영비중을 확대
 - 대부분의 카드사가 15% 수준만 “신용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
- 아울러, 이용명세서에 당해 회원의 분류그룹을 통지할 때 회원 그룹은 “신용도”외에 “회사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분류하는 것임을 명기도록 함

▶ 시행방안(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여전업 감독규정」에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시 준수할 사항을 반영
- 금감원·여전협회·카드사 공동 TF를 구성하여 기본모델을 작성
- 각 카드사는 기본모델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회원분류기준을 재작성하고 시행

② 리딩카드회사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 유도

- 회원을 재분류할 경우 수수료율 인하가 기대되지만, 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다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은행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① 카드회사는 은행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은 점
- ② 여신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 점
- ③ 담보확보가 어려운 신용대출인 점
- ④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점
- ⑤ 외국 카드사의 경우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고율인 점(미국 : Capital One 19.8%, Citibank 19.9% 등)
- ⑥ 일시불·할부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③ 수수료관련 정보 공시 강화

- 현재 각 카드사의 수수료등급 및 이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평균수수료율만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카드사의 수수료 등급의 분포현황도 공시하도록 함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규칙 개정

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회사들이 회원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신용카드를 남발
 - 부모동의 없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
 -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도 회원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갱신·대체 발급
 -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카드발급을 유인
 - 또한, 회원의 결제능력을 고려함이 없이 이용한도를 부여
 - 소득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회원의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이용한도를 부여
 - 특히, 높은 이용한도 부여를 회원확보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 ⇒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

* 2002.3말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수 : 110만명(01.1월 대비 51%증가)

나. 개선방안

- ◇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개선
- ◇ 회원의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개선

① 부당한 카드 회원모집 행위를 금지

- 회원모집 과정에서 일체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현재는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제공”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경품제공 행위를 금지(제휴회사가 지급하는 경품도 카드사가 지급하는 행위로 간주)
 - * 신용카드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금융거래실적 등을 축적한 후 고객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이고, 여전업법에서도 신용카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가두 및 방문모집 행위를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방문모집은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개정

② 휴면카드의 개신·대체 발급 제한

-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개신·대체 발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개정

③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개선

○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용한도 책정

- 카드를 신규발급할 때에는, 회원이 서면으로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함(현재는 카드회사가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부여)
-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에도 15일 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한도에 대해 회원이 축소를 요구하면 이를 즉시 반영도록 함

○ 회원의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이용한도 책정

- 카드회사는 회원이 희망한 한도금액 내에서, 당해 회원의 결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함

* 카드회사 스스로 소득과 재산액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정하되, 금감위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 시행방법(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카드회사의 내규 및 약관에 반영
- 카드사들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 대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과실에 상응하여 카드사에 책임부과(예 : 연체율 적용 배제 ~ 이용대금 일부 감면 등)

[4] 불법적인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금감원에 “신용카드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타”를 운영(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카드사별 “불법모집 기동점 검반” 등과 상시연락체계 구축
 - * 필요시 카드사별로 단속 담당지역(예 : 경기도 지역 국민카드)을 지정, 밀착 단속 실시
- 불법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색출을 위해 카드회사별로 “인터넷 사이트 감시단”을 운영도록 유도
- 제휴업체의 신규회원 모집행위는 제휴업체의 영업점 또는 대리점으로 한정(제휴계약체결시 동 내용 명시)

[5] 위규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지난 3월말의 3개 회사에 대한 신규 회원모집 정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위규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특히,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회사를 중점 점검

[6]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계도 강화

- 여전협회를 중심으로 분별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

- 주요 홍보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성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내용
 -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 모범사용 사례에 관한 사항 등
- 5월부터 일간신문, 6~7월부터는 TV 광고를 시작할 예정
-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 신용카드회사가 본래의 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카드회사들이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대출 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에 치중
 - 현금대출업무 비중이 2001년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매각채권 제외시 57%, 매각채권 포함시 68%)
- 특히,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
 - 02.4월말 현재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22% 수준에 불과함에도 현금서비스 한도를 계속 확대
 - “신용도” 보다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결과 초래
 - * 02.4말 현재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 : 2.3백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2.7백만원의 85%)
 - * ‘99.5월 월 70만원 한도 규제가 폐지된지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은 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배치,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업 부실 초래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

나. 개선방안

①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2002.7.1부터 시행하여, 현 시점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2003.12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ABS발행 등을 통해 매각한 채권까지 포함하여서는 2004.12말까지 축소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개정

② 현금서비스 한도책정시 “이용실적” 보다 “신용도”를 반영토록 개선

- 현금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현금서비스한도 책정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책정토록 개선
- ▶ 필요조치 : 신용카드회사의 약관 및 내규에 반영

4.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 ◇ 카드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카드회사 스스로 카드남발이나 무분별한 이용한도 부여를 자제도록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히 함에 따라,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급증**
 - 2001년중 카드관련 민원발생건수(금감원 접수기준) : 2,422건
(전년대비 116.3% 증가)

나. 개선방안

①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행위 제한

-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 청구를 제한
 - 금감원의 조사결과, 카드회사가 부당하게 카드를 발급 했거나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카드사에 과실에 상응한 책임 부과
- (예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전액 책임
 - 소득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연체율 적용배제 ~ 이용대금 일부 감면)

- 회원의 결제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

▶ 필요조치 : 카드사의 약관에 반영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 적극 운용

②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 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
 - 폭언·협박·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회원이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③ 신용정보제공시 사전동의 의무화

-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강화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④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스스로 축소도록 유도
 - (현행) 1일 500만원 ~ 당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 범위내
→ 1일 200만원
 - 일정금액(예: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적극 발급하도록 유도
-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등

5.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

①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 직불카드의 편의성 증대
 -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폐지
 -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 유도
- 가맹점이 직불카드 결제를 선호하도록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②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 도난 · 분실 · 위조 · 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①고의 또는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②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금액 한도”(미국의 경우 50달러)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 개정

③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체금에 대한 관리 강화
 -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IV. 추진 계획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외한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필요조치를 완료하고, 2002.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개선방안	필요조치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분류 체계 개편 및 신용도 비중 확대 - 수수료 인하 유도 - 수수료 정보 공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및 TF 구성 등 - 원가분석 실시 등 - 여전업법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6~7월 - 200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회원모집행위 금지 - 휴면카드 개신·대체 발급 제한* - 카드이용한도 책정 시 회원 의사와 결제능력을 반영 - 불법적 회원모집 행위 감시 강화 및 위규행위 회사에 대한 제재 -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계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 여전업법 시행령 및 카드사 약관 개정 -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 홍보활동 전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7월 2002.7월 2002.7월 즉시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대출업무 비중 제한* - 현금서비스 책정 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 카드사 약관 및 내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7월 2002.7월

개선방안	필요조치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카드이용대금 청구 제한*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 신용정보 제공시 사전동의 의무화 - 카드 부정사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회사 약관 개정 등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현금서비스 인출한도 축소 등 	2002.7월 2002.7월 2002.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 신용카드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률 개정 등 - 여전업법 개정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주) * 표시된 사항은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 방안”(02.2 발표)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사항임

<참고>

신용카드업 현황

1. 신용카드업 일반 현황

구 分	'97	'98	'99	'2000	'2001	'2002. 1/4
카드발급수(만매)	4,469	4,230	3,899	5,788	8,933	9,678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2.1	2.0	1.8	2.7	4.0	4.3
가맹점수(만점)	416	489	619	861	1,263	1,341
이용액(십억원)**	72,115	63,557	95,084	237,252	480,679	156,823
당기순이익(억원)	245	361	△3,475	9,379	25,942	6,616

* 전업사 및 겸영은행을 합한 수치임(단, 당기순이익은 전업사 기준)

** 98년 이전은 카드론 제외 수치

2. 신용카드회사별 현황

(2002. 1/4분기 실적, 단위 : 억원, %, 천매)

구 分	비 쌤	국 민	엘 지	삼 성	외 환	현대	동 양	우 리	계
총 자 산	7,274	126,737	162,899	169,182	55,344	8,465	8,589	39,512	578,002
자 기 자 본	1,530	13,268	15,845	15,771	6,896	2,542	370	9,923	66,145
당기순이익	257	1,444	2,085	1,807	586	6	15	416	6,616
카드채권	4,606	113,650	105,511	136,846	48,093	5,329	2,159	22,611	438,805
연체채권	324	7,210	6,046	6,326	4,232	521	226	2,299	27,184
연체비율	7.0	6.3	5.7	4.6	8.8	9.8	10.5	10.2	6.2
카드발급수	20,934	14,968	18,830	24,388	11,112	850	288	5,409	96,779
개 인	20,245	14,651	18,694	24,239	10,810	837	257	5,237	94,970
법 인	689	317	136	149	302	13	31	172	1,809

주) 카드발급수는 은행계 카드 포함